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GNSAD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제정 2013. 08. 20
개정 2015. 02. 25
개정 2016. 01. 29
개정 2016. 08. 30
개정 2018. 01. 26
개정 2019. 07. 1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26>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단”이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지도자와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운동 경기부에 두는 감독, 코치, 트레이너를 말한다.<개정 2018. 1. 26>
3. “선수”란 운동 경기부에 두는 일반선수, 훈련수당 선수를 말한다.<신설 2019. 7. 19>
4. “급여”란 선수단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선수단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운영경비”란 운동 경기부의 운영 및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용품구입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대회입상자 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기타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제2장 설치 및 구성

제3조 (설치 등) ①장애인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둔다.

②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운영과장, 주무 각 1명과 지도자,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26>

③단장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관리부장, 운영과장은 사업과장, 주무는 전문체육팀장이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2. 25, 2017. 2. 24>

1. 단 장: 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총괄
2. 부 단 장: 단장을 보좌하고 운동경기부 운영 및 감독(단장 유고시 업무대리)
3. 운영과장: 운동경기부 선수경기력 점검 및 운영 관리<신설 2017. 2. 24>
4. 주 무: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전반적인 지원<개정 2015. 2. 25, 2018. 1. 26>

④명칭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팀으로 한다.

<개정 2015. 2. 25, 2018. 1. 26>

⑤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선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에 따라 코치 및 트레이너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2. 25.>

1. 감독: 소속 선수단의 관리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관리 상황을 단장에게 보고

2.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 참가

3. 코치 및 트레이너: 감독 보좌, 선수들의 부상 관리 감독 및 경기력 향상 <개정 2015. 2. 25>

제3장 자격과 임명

제4조 (선수단 자격 요건 및 채용) ①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 단장이 채용한다.<개정 2018. 1. 26>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 제9조 3(장애인스포츠지도사)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개정 2018. 1. 26>

2. IPC(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인한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사람 또는 지도실적이 있는 자<개정 2018. 1. 26>

②선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 단장이 채용한다. <개정 2015. 2. 25. 2016. 8. 30, 2018. 1. 26>

1. 해당 종목에서 최소 2년 이상 활동하며 우수한 경기력이 입증된 선수<개정 2018. 1. 26.>

2. IPC(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가 공인한 각종 장애인대회 입상 선수 <개정 2018. 1. 26>

3. 現(현) 국가대표 선수

4. 중앙가맹경기단체에서 인정하는 실적의 전국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다관왕 입상자<개정 2018. 1. 26>

5. 신인선수<신설 2018. 1. 26>

제5조 (등급부여 및 평가) ①선수는 4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책정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8. 1. 26>

②평가는 당해년도 1월~11월 까지 대회참가에 따른 성적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등급부여는 1월~12월까지 성적을 합산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단, 신인선수는 평가와 관계없이 3년의 재계약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9. 2016.8.30., 2018. 1. 26>

③감독에게 선수의 배점 가산 권한을 100점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선수단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15.02.25, 2018. 1. 26>

제7조 (구비서류) 감독 및 선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6>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복지카드 사본 1부
4. 자격증 사본 1부
5.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중앙경기단체발행)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주민등록초본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9. 서약서 1부
10. 신체검사서 1부
11. 이적동의서 1부

제4장 복 무

제8조 (겸직금지) 선수단은 계약기간 동안 훈련 및 지도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다른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8. 1. 26>

다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중앙경기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대표팀 등의 지도 및 훈련을 위해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단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제9조 (근무시간) ①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대회에 출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6>

제10조 (공휴일) 선수단은 본 회 처무규정 제38조(공휴일)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5, 2018. 1. 26>

제11조 (이적) ①선수단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타 팀으로 이적을 원할 때에는 지급받은 연봉액에 대해서는 이적 승인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개정 2018. 1. 26>

②이적 요청시 최소 2개월 전에 이적사유, 이적팀, 이적동의서 등을 첨부한 요청서를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 26>

③기타 이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단장이 결정한다.<개정 2018. 1. 26>

제12조 (해임) 단장은 선수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 26>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2.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3. 선수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경상남도 장애인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4. 경기 또는 훈련 지도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5. 선수는 경기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7. 예산부족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할 경우
8. 지휘감독 부서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합숙소와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
9.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나 복무상 관리·운영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10. 기타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해 해임이 필요할 경우
11. 당해 연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남대표 미선발 될 경우<개정 2016.1.29>
12. MQS(Minimum qualification standard)를 미획득한 경우<신설 2018. 1. 26>
13. 지도자는 해당 종목 과반수 이상의 선수가 연간 경기실적이 300점 미만일 경우
 ※ 단, 당해연도 하반기 창단을 한 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다.<신설 2018. 1. 26>

제13조 (해임 예고) 선수단을 해임할 때에는 30일전에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6>

제5장 보수 및 지원

제14조 (급여 및 지급일) 선수단의 급여는 연봉제에 의하여 지급하며, 연봉액의 1/12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개정 2018. 1. 26>

제15조 (연봉액 결정) 선수단의 연봉액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평가한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16조 (포상금) ①선수는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 입상한 경우 [별표 4]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 26>

②지도자는 소속 선수 중 해당대회 최다금액 수혜자와 동일한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 1. 26>

제17조 (격려금) 선수단 훈련 및 국내·외 대회 참가 시 [별표 3]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 26>

제18조 (출장비) 출장비는 장애인체육회 처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1. 26>

제19조 (차량유류비 등 지원) 선수단은 훈련 및 대회참가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류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8. 1. 26>

제20조 (선수등록비) 중앙가맹경기단체 운영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회비 및 선수등록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 26>

제21조 (팀해단) 경기력 및 대회참가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선수결원, 예산부족 등으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팀을 해단 할 수 있다.<개정 2018. 1. 26>

제6장 퇴직금

제22조 (퇴직금 지급 대상) 운동 경기부에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 1. 26>

- 제23조 (의료보상 및 각종 보험 가입)** ①선수단의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지정하여 치료 및 재활하게 하고 부상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 26.>
- ②사망, 상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7. 2. 24, 2018. 1. 26.>
- ③근로계약에 따라 일반 선수는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고 훈련수당 선수는 가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7. 19>
- ④근무장소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8. 1. 26.>

제7장 훈련 및 대회참가

- 제24조 (훈련 및 출전)** ①감독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1]에 의거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 단장에게 보고하고 선수들의 개인별 훈련 상황과 경기력 향상을 기록·정리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6>
- ②[별지 1]에 의거 주간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다음주의 훈련계획을 단장에게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26>
- ③선수단은 각종대회와 국가대표 파견 및 강화훈련 등에 참가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 26>

- 제25조 (대회참가 및 강화훈련)** ①감독은 대회참가 및 강화훈련 시 2주전에 참가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참가하여야 한다.
- ②[별지2]에 의거 대회종료 및 강화훈련 종료 후 6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훈련장 등 시설 사용 지원)** ①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및 각종 장비에 대하여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 ②선수단의 훈련성 제고와 경기 적응훈련 등을 위해 유료시설을 훈련장(체력 단련장 포함)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 26>

- 제27조 (대회출전비 및 강화훈련비)** 운동경기부 지원 인력이 대회출전 또는 강화훈련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전비와 훈련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선수단의 훈련성 제고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별표 5]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식비, 목욕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 26>

- 제28조 (장비 등 구입비)** 선수단이 훈련과 경기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운동용품 및 장비와 피복 및 유니폼 등은 계절별 특성에 맞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장비 구입시 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장 후원 및 홍보

- 제29조 (후원)** ①운동경기부는 후원 업체를 확보할 경우후원금품, 적용범위, 후원계약서 등 전

반에 대해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 26>

②후원을 받는 경우 해당 종목 선수단의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수 개인에 대한 후원은 금지한다.<개정 2018. 1. 26>

제30조 (홍보) ①후원업체의 로고를 경기복 등에 부착할 수 있으나 장애인체육회 로고가 추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팀명 변경은 불가하다.

②선수단은 단장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 및 선전, 방송출연 등 일체의 영리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할 수 없다.<개정 2018. 1. 26>

제9장 부 칙

제1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관련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처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정 시점 이후의 첫 번째 계약기간은 2013.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2. 25>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1. 29>

제6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 8. 30>

제7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1. 26>

제8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7. 19>

【별표 1】 등급 책정 기준 <개정 2015. 2. 25, 2018. 1. 26, 2019. 7. 19>

○ 등급

등급	선수	인원	비고
S등급	◦ 배점합계 800점이상	3명 이내	
A등급	◦ 배점합계 500점이상	3명 이내	
B등급	◦ 배점합계 300점이상	3명 이내	
C등급	◦ 신인 유망 선수	2명 이내	

○ 선수배점

구분	인정기간	순위	배점	비고
패럴림픽대회 데플림픽대회	4년	1위	400	국가대표 참가배점 100
		2위	300	
		3위	200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	4년	1위	200	국가대표 참가배점 50
		2위	150	
		3위	100	
아시아장애인선수권대회	2년	1위	70	국가대표 참가배점 30
		2위	60	
		3위	50	
장애인국제대회 (국제연맹주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년	1위	100	-
		2위	80	
		3위	60	
장애인국내대회	1년	1위	50	-
		2위	40	
		3위	30	

※ 경기 종목중 단체전은 개인전과 동일하게 배점하고, 탁구팀의 경우 대회출전 이벤트수가 다른 팀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배점을 50% 가산하여 책정한다. 단, 국제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9. 7. 19>

※ 4년 주기 대회의 경우 개최년도를 기준으로 1년경과 시 마다 배점의 25%, 2년 주기 대회 경우 50%를 감(減)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2. 25>

※ 선수는 배점 합계가 30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으며, 등급별 인원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5>

【별표 2】 선수단 연봉액 지급 기준 <개정 2015. 2. 25, 2016. 1. 29, 2018. 1. 26.>

(단위: 천원)

구분		등급	연봉액	비고
지도자		-	36,000 ~	
코치		-	30,000 ~	
트레이너		-	24,000 ~	
선 수	일반	S	30,000 ~	
		A	27,600 ~	
		B	24,000 ~	
		C	21,600 ~	
	훈련수당	-	12,000 ~	

<개정 2016.01.29.>

【별표 3】 격려금 지급 기준 <개정 2015. 2. 25, 2016. 1. 29, 2018. 1. 26.>

(단위: 천원)

구분	지급금액		비고
	지도자	선수	
패럴림픽대회 데플림픽대회	500	500	4년 주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	400	400	4년 주기
아시아장애인선수권대회	300	300	2년 주기
장애인국제대회 (국제연맹주관)	300	300	-

※ 단, 국가대표 선발을 통한 국제대회 출전시 적용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신설 2016.1.29.>

【별표 4】 포상금 지급 기준 <개정 2015. 2. 25, 2016. 1. 29, 2017. 2. 24, 2018. 1. 26.>

(단위: 천원)

구분	포 상 기 준			비고
	1위	2위	3위	
패럴림픽대회 데플림픽대회	4,000	3,000	2,000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세계장애인세계선수권	2,000	1,500	1,000	
장애인국제대회 (국제연맹주관)	500	400	300	
전국장애인체육대회	700	500	300	
장애인국내대회	100	70	50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9>

【별표 5】 수당 등 지급 기준<신설 2018.1.26>

(단위: 원)

구분	명절수당	급식비	특식비	목욕비	비고
감독	800,000	130,000	20,000	20,000	
코치	600,000				
트레이너	600,000				
선수	500,000				

※ 명절수당 연2회, 급식비·특식비·목욕비 매월 지급 할 수 있다.

【별표 6】 선수단 경력수당 지급 기준<신설 2018.1.26>

(단위: 천원)

구분	연차	금액(月)	비고
선수단	1년 이상 ~ 2년 미만	60	
	2년 이상 ~ 3년 미만	100	
	3년 이상 ~ 4년 미만	150	
	4년 이상 ~ 5년 미만	200	
	5년 이상 ~	250	

※ 경력수당은 2018년 경력수당부터 인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 할 수 있다.

【별지 1】

지도계획서

20 년 월 종목 : 지도자 :	
연간목표 (월간)	

구분	주간지도계획	장소
1월 (1주)		
2월 (2주)		
3월 (3주)		
4월 (4주)		
5월 (5주)		
특기사항		

【별지 2】

결과보고서

선수명	세부 종목	주요 성적		수준	비고
		전국대회 실적	전국장애인체전		
특이 사항	<p>○ 대회출전</p> <p>—</p> <p>—</p> <p>—</p> <p>—</p> <p>○ 애로사항</p>				

[고 용] 계 약 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와 “○○○”은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근무장소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와 훈련장, 감독이 정하는 관내·외로 한다.

제3조 “○○○”은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팀 선수단으로 하며, 직위는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로 한다.

제4조 연봉액은 금○○,○○○,○○○원(금○○○○○원)이며, 연봉액의 1/12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5조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는 계약기간동안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과 제규정 등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근로조건 기제

제7조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와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인)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450(두대동) 창원종합운동장 155-3호

○○○(선수, 감독, 코치, 트레이너) (인)

주소: